

의안 번호	2047
----------	------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2020. 11.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1 위원회 구성

### 구성목적

-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와 실·국 별로 각개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정책을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서울시 청년정책의 올바른 대안 제시와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구성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 구성경위

- 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 : 제290회 제1차 본회의('19.11.1.)
- 위원선임 : 제290회 제2차 본회의('19.11.18.)
-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 제290회 정례회 제1차 청년정책 특별위원회('19.12.16.)
  - 위 원 장 : 김호평 의원
  - 부위원장 : 송아량, 권수정 의원

### 활동기간

- 1년('19.11.18. ~ '20.11.17.)
  - 6개월 활동('19.11.18. ~ '20. 5.17.) 후 연장('20. 5.18. ~ '20.11.17.)

## 2 위원회 활동내역

### 1. 조례 개정 추진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 의안번호(1294), 제안일자(2020.02.05.)
- 발의자 : 김호평 의원(공동발의)
  - 공동발의 의원 : 권수정, 김재형, 서윤기, 송아량, 송정빈, 오현정,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준형, 정진술, 최선, 한기영
- 개정취지
  - 「청년기본법」 제정(2020. 2. 4.)에 따라 동 법 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 청년정책을 내실화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함
- 주요내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청년기본법」으로 변경함
  - 서울시 청년들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의 활동 기회를 보장
  -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안건 처리일 : 제29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0.02.28)

##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의안번호(1285), 제안일자(2020.02.05.)

○ 발의자 : 김재형 의원(1인발의)

- 찬성의원 : 강동길, 고병국, 김제리, 김종무, 김화숙, 노식래, 문장길,  
신정호, 임종국

○ 개정취지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확대를 위하여 비주거 건축물의 노후 건축물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효율적인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을 개정하는 등 입주대상자 규정을 정비하여 청년층의 거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김재형 위원이 대표 발의함.

○ 주요내용

- 비주거 건축물의 노후건축물 기준 적용 배제  
-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용어 변경 및 일부 차량소유 허용  
-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각 위원회 별 최소인원 규정 수정

○ 안건 처리일 : 제291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03.06)

##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 일 시 : 2020. 7. 29.(수)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 참 석 자 : 이동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청년청장 등
- 주요내용 :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현황 등 논의
  -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청년자율예산제의 근거를 신설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
  - 청년정책을 고도화, 내실화, 다각화하여 서울시와 청년들이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 행사사진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 일 시 : 2020. 8. 7.(금), 15:00~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 대회의실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시의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 참 석 : 서울청년시민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20명  
※ 유튜브 동시 생중계(수백명 참여)
- 주요내용 : 사례발표, 기조발제, 토론 및 질의응답 등
  - 청년 당사자 사례 발표
  -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의미와 배경, 청년 시정참여와 거버넌스 제도적 기반 필요성 기조 발제
  - 청년참여 활성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참석자 토론
- 행사사진



##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 의안번호(1809), 제안일자(2020.08.11.)
- 발의자 : 이동현 의원(공동발의)
  - 공동발의 의원 :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문병훈, 송아량, 신원철, 오한아, 오현정, 이병도, 이상훈, 한기영
- 제정취지
  -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사업상으로만 운영되어 왔던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청년들의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발의함
- 주요내용
  - “청년”의 정의를 「청년기본법」 제3조 1호를 따르며 “청년참여”, “청년참여기구”, “청년자율예산” 등의 용어를 정의
  - 청년참여기구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 청년 참여자문회의를 청년 정책 전문가, 청년 단체 활동가, 청년참여기구의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여 자문회의를 할 수 있게 함
- 안건 처리일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3)

##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

- 의안번호(1863), 제안일자(2020.08.12.)
- 발의자 : 김호평 의원(공동발의)
  - 공동발의 의원 : 권수정, 김재형, 서윤기, 송아량, 송정빈, 오현정,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준형, 정진술, 최선, 한기영
- 개정취지
  - 「청년기본법」 제정(2020. 2. 4.)에 따라 동 법 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함
- 주요내용
  -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
  - 시,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은 의무적으로 청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함을 규정
  -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 청년들의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
- 안건 처리일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3)



## II. 업무보고 및 간담회

### □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제291회 임시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20. 3. 6.(금), 11: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김호평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 보 고 자 : 청년청장
- 보고내용
  -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총괄 보고
  - 일자리, 살자리 등 분야별 핵심사업 및 청년 자율예산 보고
- 주요 건의사항
  - 청년청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법인 다각화로 경쟁구조를 만들어 청년정책의 서비스 질 제고
  - 청년교류공간에 대한 홍보 강화
  - 청년자율예산 사업에 추진에 있어 투명성 제고
- 업무보고 사진



## □ 2020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간담회 추진

- 일 시 : '20. 6. 25.(목) 19:30~21:00
- 장 소 : 세종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 세종홀
- 참 석 자



〈 웹포스터 〉

- (오프라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진, 서울시 실본부국 국장,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 등 100여명
  - (온라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 1,000여명 대상 온라인생중계
- 주요내용 : 정책제안자와 소관부서 및 시의회 간 제안정책 논의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세대가 공존하는 서울 위한 정책제안과제 발굴 및 제안
  - 청년이 제안한 81개 정책제안과제를 바탕으로 민-관-의회 상호소통 및 협력
- 행사사진



### 3 향후계획

- 「청년, 주거정책 기준을 돌아보다」 온라인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20. 11. 12.(목), 19:00~21:00
  - 참석 : 김호평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 주요내용 : 주거정책 분배 기준 관련 발제, 토론 및 질의응답 등
-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및 관계자 정책간담회 개최(11월 중순)
  -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및 청년정책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정책간담회 개최
-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 붙임 1.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2. 청년기본법.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끝.

[붙임1]

#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2020. 10. 23. 현재)

성 명		선거구	의원연구실 (FAX)
	<b>김 호 평</b> (金屬評) 위원장	광진 3 (더불어 민주당)	605호 사) 2180-8461~2 팩) 2180-846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b>송 아 량</b> (宋我良) 부위원장	도봉 4 (더불어 민주당)	722호 사) 2180-8616~7 팩) 2180-8620 교통위원회
	<b>권 수 정</b> (權秀靜) 부위원장	비례대표 (정의당)	822호 사) 2180-8806~7 팩) 2180-8810 보건복지위원회
	<b>김 재 형</b> (金在亨)	광진 4 (더불어 민주당)	836호 사) 2180-8876~7 팩) 2180-8880 행정자치위원회
	<b>서 윤 기</b> (徐允基)	관악 2 (더불어 민주당)	704호 사) 2180-8526~7 팩) 2180-8530 기획경제위원회
	<b>송 정 빈</b> (宋正彬)	동대문 1 (더불어 민주당)	728호 사) 2180-8646~7 팩) 2180-8650 환경수자원위원회
	<b>오 현 정</b> (吳眩姪)	광진 2 (더불어 민주당)	717호 사) 2180-8591~2 팩) 2180-8595 환경수자원위원회
	<b>이 경 선</b> (李京洗)	성북 4 (더불어 민주당)	516호 사) 2180-8396~7 팩) 2180-840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b>이 동 현</b> (李東炫)	성동 1 (더불어 민주당)	723호 사) 2180-8621~2 팩) 2180-8625 교육위원회
	<b>이 병 도</b> (李秉道)	은평 2 (더불어 민주당)	811호 사) 2180-8751~2 팩) 2180-8755 기획경제위원회
	<b>이 준 형</b> (李俊炯)	강동 1 (더불어 민주당)	814호 사) 2180-8766~7 팩) 2180-8770 기획경제위원회
	<b>정 진 슬</b> (鄭鎭述)	마포 3 (더불어 민주당)	721호 사) 2180-8611~2 팩) 050-8098-0613 도시안전건설위원회
	<b>최 선</b> (崔 善)	강북 3 (더불어 민주당)	719호 사) 2180-8601~2 팩) 2180-8605 기획경제위원회
	<b>한 기 영</b> (韓基盈)	비례대표 (더불어 민주당)	801호 사) 2180-8701~2 팩) 2180-8705 행정자치위원회

###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국무조정실(청년정책과) 044-200-632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날)**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7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부칙** <제16956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0. 10. 5.] [서울특별시조례 제7695호, 2020. 10. 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청년청), 02-2133-65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6., 2020. 10. 5.>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5. 16., 2020. 3. 26.>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 마. 청년의 부채 경감
  - 바. 청년의 생활안정

### [붙임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 아. 청년의 권리보호
  - 자. 청년의 건강증진
  - 차. 청년의 국제협력
  - 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0. 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 10. 5.>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경제·주택·복지·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 [붙임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 10. 5.]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8.>

-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8.>
-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자문회의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2020. 10. 5.>
-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6. 1. 7.>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 ⑤ 삭제 <2020. 10. 5.>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5.>
- ⑤ 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5.>

[제목개정 2020. 10. 5.]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개발하여 시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붙임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⑤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조건에 있는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8.>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②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제목개정 2020. 10. 5.]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건강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0. 10. 5.>  
1.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2.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③ 시장은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5.>

[본조신설 2019. 5. 16.]

[중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 5. 16.>]

**제19조(청년의 국제협력)** 시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6.]

### [붙임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중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3. 26.>]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②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0. 5.>

1.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3.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4. 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0. 5.>

1.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능력개발 및 진로모색 사업
2.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3. 청년지원 전문인력 육성사업
4.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지원·교육·평가
5. 그 밖에 청년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10. 5.>

1.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2.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3.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4. 그 밖에 청년의 생활권 기반 정책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시장은 청년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5.>

⑥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5.>

[제목개정 2020. 10. 5.]

[제19조에서 이동, 중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 3. 26.>]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 10. 8.>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0. 8.>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에서 이동, 중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 3. 26.>]

**제22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중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3. 26.>]

### [붙임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제22조의2(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6.]

**제23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청년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 3. 26.>]

**제24조(표창)**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6.]

부칙< 제7695호,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